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
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위생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2. 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사업

3. 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5. 인천광역시 맛 집 또는 대표음식 등 개발, 섬 특색 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고·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5.12.22, 2016.2.3] [[시행일 2016.12.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12.23]]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 각 호의 사업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사업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연차별 10%

증액 반영

○ 2호의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사업

- (기존사업) 토탈미용 아카데미 지원·육성 사업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 교육 사업

○ 3호의 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을 통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 함.

○ 4호의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사업

- (기존사업) 공중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사업

○ 5호의 인천광역시의 맛 집 또는 대표음식 개발, 섬 특색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사업

- (기존사업) 섬 특색음식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 1호, 6호 각 지원사업은 범위가 크고 정기적이지 않은 한시적 사항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나. 추계 결과

- 사업예산 세출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시 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 세부 비용추계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지원사업 (제4조)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기술개발사업	• 토탈미용아카데미 지원·육성 사업 • 공중위생서비스 개선교육사업	164,838	20,000	22,000	24,200	26,620	29,282
	공중위생 조사·연구 사업	• 공중위생발전 조사연구사업	20,000	0	0	20,000	0	0
	공중위생관리 등급 지정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사업	•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사업	67,500	11,000	12,000	13,500	14,800	16,200
	맛 집 또는 대표음식 개발, 섬특색 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 사업	•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366,306	60,000	66,000	72,600	79,860	87,846

다.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원칙으로 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보건복지국 위생안전과장 천정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기금	-	-	-	-	-	-
	소계	-	-	-	-	-	-
세출	사업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소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재원 조달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일반회계	618,644	98,000	107,700	138,770	130,597	143,577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